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규제기능 일원화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위해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기능 중 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획조정부로 조정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14.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및 운영지원과를”을 “·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를”로,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을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7호 중 “관련 안전·보건”을 “등 관련 안전·보건 및 생물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추적조사

4. 재생의료 안전관리 관련 연구
5. 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생의료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제17조제2항 중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난치성질환연구과 및 재생의료안전관리과”를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로, “보하고,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8장(제32조)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76”을 “473”으로, 일반직 계 “475”를 “472”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을 “55”로,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를 “21”로, 보건연구사 “90”을 “8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78”을 “475”로, 일반직 계 “477”을 “474”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을 “55”로,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를 “21”로, 보건연구사 “90”을 “8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8”을 각각 “204”로,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0”을 “9”로, 보건연구사 “88”을 “8

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0”을 각각 “206”으로,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0”을 “9”로, 보건연구사 “88”을 “85”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10”을 각각 “706”으로,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서기 · 의료기술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2”를 “220”으로,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1”을 “70”으로, 보건연구관 “29”를 “28”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7”을 각각 “96”으로, 4급 이하 “96”을 “95”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의 정원란 중 “53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란 중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으로 하며, 같은 란의 2024년 12월 31일까지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을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④ (생 략) ⑤ 만성질환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3. (생 략)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 산 및 관리</u> 5. ~ 7. (생 략) 8. <u>「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u> 9. (생 략) ⑦ ~ ⑪ (생 략)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생 략)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 산 및 관리</u> 14. <u>「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u>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현행 과 같음)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생명과학연구기반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신설>

② -----
----- ·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

-----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추적조사
4. 재생의료 안전관리 관련 연구
5. 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생의료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관리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생략)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난치성질환연구과 및 재생의료안전관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⑧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⑥ -----
-----.

1. ~ 6. (현행과 같음)

7. ----- 등 관련 안전·보건 및 생물안전-----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

--- 보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u>2.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u> <u>3.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추적조사</u> <u>4. 재생의료 안전관리 관련 연구</u> <u>5. 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u> <u>6. 재생의료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u>	
<u>제8장 한시정원</u> <u>제32조(한시정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u>	<u><삭 제></u>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 계	· <u>476</u>	· <u>473</u>	-3
· 일반직 계	· <u>475</u>	· <u>472</u>	-3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 <u>56</u>	· <u>55</u>	-1
·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 <u>22</u>	· <u>21</u>	-1
· 보건연구사	· <u>90</u>	· <u>89</u>	-1
·	·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8	475	-3
일반직 계	477	474	-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	55	-1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21	-1
보건연구사	90	89	-1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08</u>	<u>204</u>	-4
일반직 계	<u>208</u>	<u>204</u>	-4
·	·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 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10</u>	<u>9</u>	-1
·	·	·	
보건연구사	<u>88</u>	<u>85</u>	-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10</u>	<u>206</u>	-4
일반직 계	<u>210</u>	<u>206</u>	-4
·	·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 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10</u>	<u>9</u>	-1
·	·	·	
보건연구사	<u>88</u>	<u>85</u>	-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10</u>	<u>706</u>	-4
일반직 계	<u>710</u>	<u>706</u>	-4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 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22</u>	<u>220</u>	-2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 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71</u>	<u>70</u>	-1
·	·	·	
보건연구관	<u>29</u>	<u>28</u>	-1
·	·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97</u>	• <u>96</u>	-1
일반직 계	<u>97</u>	<u>96</u>	-1
•	•	•	
4급 이하	<u>96</u>	<u>95</u>	-1